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8.12.(수) 조간	배포	2026.8.11.(화)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철영 (02-3145-8888)
		담당자	수 석	신상현 (02-3145-8739)

“보험사기 잡아낸 노하우, 적극 공유합니다” - 「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·예방 우수사례 공모전」 개최 -

◆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*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,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,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·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

*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보험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음

- '26.8.12.~9.30.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*한 후,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

* (접수대상) 보험회사, 손해사정법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

◆ 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개별 조직에 국한되었던 보험사기 적발·예방 노하우를 발굴·공유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조사기법이 제고되고,

- 향후 우수사례 대외 공개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

1

개최 배경

□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 사례·예방 활동을 발굴·포상하여 보험업계의 조사업무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,

- 보험회사, 손해사정법인,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'26년 「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·예방 우수사례 공모전」을 개최합니다.

2

공모 방법

□ 공모 분야는 ①「보험사기 적발」, ②「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」 총 2개 부문입니다.

- 대상자(보험회사, 손해사정법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)께서는 '26.9.30.까지 공모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공모 분야 예시>

공모 분야	주요 내용 예시
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	• 창의적인 기법 또는 공조·협업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사례 <예시> 해외 여행 중 넘어져서 수술을 받았으며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, 해외 현지 경찰 및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임을 입증 • 지능적·조직적인 보험사기 적발 사례 <예시> 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는 전담팀을 구성, 환자와 공모하여 고가의 미용시술을 제공한 후 보험금을 부당 편취
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	• 보험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개선 사례 <예시> 보험금 청구서류(진료기록부 등) 조작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서류 편집 흔적(픽셀 차이 등)을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 위·변조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 •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·내외 홍보활동

3

심사 및 시상

□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총 10명*의 수상자(최우수 1, 우수 3, 장려 6)를 선정 예정('26.12월 시상식 개최 예정)

* 보험사기 적발 부문 6명, 보험사기 방지 사전 예방활동 부문 3명, 2개 부문 총 최우수 1명

-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, 우수·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소정의 상금이 지급됩니다.

- 최근 보험사기 범죄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, 금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·손해사정업계에서 적발한 보험사기 수법 및 예방 활동을 상호 적극 공유함으로써,
 - 신·변종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지며, 아울러 향후 우수사례 수상작에 대한 대외 공개 등을 통해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적극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'특별 신고·포상 기간'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적발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당부드립니다.

<참고>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

◆ (신고기간) '26.1.12.(월) ~ 10.31.(토)

◆ (신고대상)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방병원, 한의원 포함), 의사, 자동차 정비업체(덴트포함)·렌터카 업체 관계자,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, 브로커 등

◆ (신고인) ①병·의원관계자(의사, 간호사, 상담실장 등), ②환자 유인·알선 브로커(설계사 등), ③의료기관 이용 환자, ④자동차 정비(덴트포함)·렌터카 업체 관계자, 차주·운전자·동승자 등

◆ (신고처)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

①(전화) 금감원 콜센터[국번없이 1332 → 4번(금융범죄) → 4번(보험사기)] 및 보험사 대표번호

②(인터넷) 금감원 '보험사기신고센터'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'보험범죄신고센터'

③(우편)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(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) 및 각 보험사(본사) SIU 부서

◆ (포상금)

신고인 구분	특별포상금(한시 적용)		보험범죄 신고포상금 (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)
	포상금(정액)	지급 기준	
·병·의원(한방병원, 한의원 포함) 관계자	5,000만원	• 수사 확정 또는 진행 • 구체적 증거 제공 •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	적발금액 구간별* 신고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* 5천만원 미만 100만원, 5천만원~1억원 200만원 등, 최대 20억원
·병·의원 제보 브로커(설계사 등) ·자동차 정비(덴트포함)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	3,000만원		
·의료기관 이용 환자 ·차주·운전자·동승자·기타	1,000만원		